

제한경쟁사유서

1. 건명 : 2019년 신호설비 전원장치 유지보수 용역

2. 제한내용(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하고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중 아래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

- 1) 무정전전원장치(UPS) 10kVA이상 제조 또는 유지보수 실적이 10대 이상 있는 업체
(단, 민간 실적은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첨부 시 인정하고, 제조하여 납품한 실적은 공장등록증 사본 첨부 시 인정)
- 2)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공고일 전일 현재 서울 또는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

3. 주요 용역내역

가. 아래의 장치의 정기검사, 유지보수, 고장 시 긴급출동 및 수리

- ① 무정전전원장치(UPS) 74대
- ② 자동전압조정장치(AVR) 61대
- ③ 정류기 111set
- ④ 축전지 74조
- ⑤ 자동절체기(ATS) 74대
- ⑥ ATO분전반 14조

4. 제한경쟁의 구체적 사유

가. 신호설비 전원장치 유지보수 외주용역은 열차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궤도회로, 연동회로 등 모든 신호보안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의 유지보수 용역으로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용역임.

나. 신호보안 설비의 동작에 이상이 없고 제한시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여 열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전원장치에 대한 이해와 전문기술을 보유한 전원장치(UPS) 제작 설치 또는 유지보수 용역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

다. 또한 본 용역은 서울시 및 경기도 내의 지하철 1~4호선 신호설비 전원장치에 대한 정기검사, 유지보수, 고장 시 긴급출동 및 수리를 해야 하는 사업으로,

라. 발주처와 사업자 간의 수시로 긴밀한 업무협조 및 긴급출동 시간을 고려하여 서울,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 제한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으므로 지방계약법에 의거 실적 및 지역제한 경쟁 입찰을 추진함.

5. 관련법조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2절 및 제3절

2019. 7.

작성자 : 신호처 과장 권부석 *(인장)*
확인자 : 신호처 처장 강봉완 *(인장)*

불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계약법)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42호, 2018. 12. 24, 일부개정]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44-205-3783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기준 및 지명절차,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6.>

[전문개정 2009. 2. 6.]

부칙 <제16042호, 2018. 12.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제7호다목·바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붙임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 2019. 6. 25] [대통령령 제29896호, 2019. 6. 25, 일부개정]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44-205-3783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0. 28.,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19., 2016. 1. 15., 2016. 9. 13., 2016. 11. 29., 2017. 7. 26., 2017. 8. 9., 2019. 6. 25.>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그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계약 대상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이 경우 해당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면 해당 물품제조계약의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4. 삭제 <2016. 11. 29.>
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계약 대상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이 경우 해당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면 해당 용역계약의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6. 추정가격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7. 제21조에 따른 제한방법으로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기준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공고한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9. 삭제 <2019. 6. 25.>
10.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다음 각 목의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 제품
 - 나. 삭제 <2017. 1. 26.>
 - 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 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 마.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을 활용한 물품
 1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방

법에 따라 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1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로부터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 가.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 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입찰로서 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입찰참가자격자에게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통지일로 보며 통지시기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6.]

붙임3

[시행 2018. 12. 1.][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2018.11.8.,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 정 안 전 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2절 제한입찰의 범위와 구분

제한의 종류	계약 목적물	제한 요건	비고
1. 해당 계약 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종합공사 ○ 추정가격 3억 원 이상 전문·그밖의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계약목적 물의 규모 또는 양의 1/3이내 단, 계약목적물의 특성, 안전성, 난이도 등 고려 규모 또는 양의 1/3 이상 1배 범위에서 최소실적기준 정할 수 있음 ○ 해당 계약목적 물의 금액의 1 배 이내
	물품 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1> 추정가격 2.1억원 이상 특수한 설비·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 ○ 추정가격 2.1억원 이상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 	
2. 기술보유상황으로 제한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1>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물품 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1>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용역 	
3. 시공능력평 가액으로 제한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종합공사 ○ 추정가격 3억 원 이상 전문·그밖의 공사 	
4. 지역제한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종합공사 ○ 추정가격 7억 원 미만 전문공사 ○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혁신도시 건설 전문공사 ○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전기·그밖의 공사 	
	물품 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정가격 3.2억 원 미만 시·도(세종시 제외) 일반 용역·물품 ○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 세종시, 시·군·구 일반용역·물품 ○ 추정가격 2.1억 원 미만 건설기술용역 ○ 추정가격 1.5억 원 미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1. 제한의 기본원칙

- 가. 계약목적물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제한의 범위를 정한다.
- 나. 다음 각 호 중 2개 항목 이상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① 동일실적 ② 기술의 보유상황 ③ 시공능력평가액 제한 ④ 지역 제한 ⑤ 설비제한 ⑥ 유자격자 명부에 따른 제한 ⑦ 물품의 납품능력 ⑧ 중소기업자

<예외>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별표 1에 해당하는 공사)의 ④와①, ④와② 또는 ⑧과 각 호의 어느 하나와는 중복하여 제한 할 수 있다. [예시) 중소기업자+동일 실적, 중소기업자+기술의 보유 상황, 중소기업자+지역제한, 중소기업자+설비제한 등]

- 다. 지역제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현장·물품의 납품지·용역의 최종결과물 납품지(감리용역 등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현장)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있는 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